

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43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9. /2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도시정비기금 출연기간 연장 및 매년 출연금을 축소하고 도시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한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.
- 도시정비기금 존속기한(2013년 12월 31일)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법제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도시정비기금 출연기간을 2018년으로 연장하고, 출연금을 매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(안 제2조)
- 나. 도시정비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 2)
- 다. 법제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조문을 정비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□ 신.구조문대비표 : 붙임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있음(별첨)

- 입법예고 : 2013. 8. 6. ~ 8. 26.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「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 계획

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도시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를 “안산시도시정비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기금”을 “안산시도시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시”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13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총 308억원을 매년 30억원을 출연한다.”를 “2018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총 358억원을 매년 10억원씩 출연한다.”로 한다.

제2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“시의회”를 “안산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.과		환경정책과
임 안 자	실.과장 직위.성명	도시계획과장 조 정 익
	담당.팀장 직위.성명	도시정비계장 최 진 영
	담당자 성명.전화	최 정 희 (행정 2383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안산시도시정비기금.....
제2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시의 출연금 2. (생략) 3.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13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총 308억원을 매년 30억원을 출연한다.	제2조(기금의 재원) ① 안산시도시정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..... 1.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의 ② 2018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총 358억원을 매년 10억원씩 출연한다.
제2조의 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조의 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생략) ② 시장은 기금을 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 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	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....제8조에 따라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기금운용계획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당해 연도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. (생략) 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p>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기금운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1. (현행과 같음) 2. 해당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의 ③ 따라안산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</p>
<p>제13조(기금결산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기금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라</p>

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제2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도시정비기금 존속연장에 따른 출연금 발생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존속기한 연장기간(2014년 ~ 2018년)에 한함.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계
총 소요액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도시정비기금 출연금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14년~201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출연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사항없음

4. 작성자 :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장(조정익)

(제2-2쪽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 (2014년)	2차연도 (2015년)	3차연도 (2016년)	4차연도 (2017년)	5차연도 (2018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도시정비기금 출연금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수입					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